

##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3. 9.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 □ 제정이유

-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을 도모하고 이천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촉진하는 등 재활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 제정 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2003년도 본예산)  
1백만원 × 1개소 × 12월 = 12백만원 (도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

사전예고결과 : 이의사항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3. 6. 21. ~ 7. 10.

기타참고사항

- 장애인재활작업장 지도·감독 철저[경기도 장복 65141-10732('02.5.21)]

##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장애인재활작업장의 명칭은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작업장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248-8번지에 둔다.

**제3조 (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제4조 (시설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고용대상 장애인등)** ①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다음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1.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2. 당해 작업장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3. 당해 직종에 관한 기술습득이 가능한 장애인
4. 기타 운영규정에 시장이 별도로 명시한 장애인등

②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고용 인원의 10분의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9조 (관리직원)**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 이라 한다)와 관리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기타 제규정에 의한 회계·사무관리직원등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작업장장은 장애인 근로여건, 판매망 개척등 작업장의 운영·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채용하고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 (급여)** ①제8조 제1항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자체수익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 제2항중 비장애인과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1조 (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고용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본 조례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천시에서 제정한 조례등에 의한다.

- ②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④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⑤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중 고용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제2항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서 광 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장애인담당 유 지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종 현 (2229)

##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障礙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통하여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하여 事業主 및 國民一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教育、弘報 및 障礙人雇傭促進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主、障礙人 기타 關係者에 대한 지원과 障礙人의 특성을 고려한 職業再活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障礙人의 雇傭促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綜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重症障礙人 및 女性障礙人에 대한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8條 (都市型工場) 産業資源部長官은 尖端産業의 工場, 公害發生정도가 낮은 工場 및 都市民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工場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型 工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